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권 인 순 의원)

의 안 변 호	25-76
------------	-------

발의년월일: 2025. 8. .

발의자: 권인순, 고병준, 김승수, 이상원,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최은하,
한선미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접근성을 높여 정보격차 해소하는 동시에 문화생활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안 제3조)
- 다. 방송사와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방법 등(안 제5조~제7조)
- 마. 지원의 중지 및 환수, 중복지원에 따른 감액지원(안 제8조, 제9조)
- 바. 지원대상자의 관리, 통지의 의무(안 제10조, 제11조)
- 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안 별지 제1호서식)

3. 관계법령

- 가.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의2
- 나.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30조, 제32조
-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라. 「방송법」 제2조
- 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2025. 8. 1. ~ 8. 6.
-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이자 실제 홀로 사는 75세 이상의 노인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 협약된 방송사의 유료방송 시청을 희망하는 사람으

로 한다.

②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한다.

제4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기간·해지·효력 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장비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장비 사용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이용요금 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 후, 지원대상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할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등) ①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에게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 달에 이용요금을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지원시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한다.

1. 지원대상이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제2조제1호의 저소득 주민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타인에게 유료방송 서비스를 양도한 경우

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중복지원에 따른 감액지원)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3호에 따

른 방송사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감액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관리) 동장은 매월 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통지의 의무)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지원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본 신청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급여자격, 거주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마포구청 및 동주민센터가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본 신청과 관련하여 유료방송 설치 및 지원관리를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방송사가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유의사항	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에 따라 기존 유료방송 해지위약금 등 기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일체의 비용을 신청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해당 방송사와 동주민센터에 신고하겠으며, 신고 누락으로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금액 전부를 반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지원대상자” 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7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지원대상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확인사항	■ 지원대상자 여부 : ■ 주민등록 등재 및 실거주 여부 :			(직급) (성명)	인
확인기관	동장 (직인)				

【관 계 법 령】

노인복지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타법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5. 7. 3.] [법률 제19901호, 2024. 1. 2., 일부개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4. 1. 9.>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삭제 <2021. 7. 27.>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⑨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7. 3.] [보건복지부령 제1120호, 2025. 7. 1.,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진단·재활·치료·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73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

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4. “중계유선방송”이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음악유선방송”이라 함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 “음악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광판방송사업”이라 함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전광판방송사업자”라 함은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전송망사업자”라 함은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0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5.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송분야”라 함은 보도·교양·오락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18.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교양·오락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문편성”이라 함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0. “유료방송”이란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여러 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 20의2. “채널”이라 함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말한다.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23. “방송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4.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6. “기술결합서비스”란 지상파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 상호간 또는 이들 방송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7. “외주제작사”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약칭: 인터넷방송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

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말한다.

3.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 송신 또는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그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
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조례안 제5조(지원내용)
- 나. 수입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따른 비용은 2026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되, 협약사항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계기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0	0	0	0	0	0
	○	0	0	0	0	0	0
	소계(a)	0	0	0	0	0	0
구분	세출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165,000
	○ 운영비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165,000
구분	소계(b)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165,000
	□ 총 비용(a-b)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165,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자체 수입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165,000
	지방세수입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165,000
	세외수입 등						
구분	소 계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165,000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165,000

5. 덧붙이는 의견: 마포구 수급자(생계·의료) 중 75세이상 1인 노인가구 및 심한장애인가구
약 500가구에 대하여 월 5,500원 지원을 기준으로 추계한 금액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 강류미
연 락 처	02-3153-6457